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30 선고 2020가단9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프터너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3. 30

주 문

1. E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한 2019. 5. 27.자 각매매계약은 각 2,666,666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E에게 8,0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E는 2019. 5. 27.경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 약 465,000,000, 소극재산 2,649,732,300원)에 있었으며, E가 2019. 5. 27. 자녀들인 피고들과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이 2019.5. 27.경 E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F 주식회사가 2019. 5. 27.경 무자력이 아니었고,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기재에 따르면, G 주식회사가 2019. 6. 10.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000,000원의 3분의 1범위내인 2,666,666원의 범위 내에서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각 2,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동욱

별지